

#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79
----------	------------

2014년 4월 24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세부 교환 재산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국유지 토지교환취득 및 시유 토지·건물 교환처분의 건은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함.

## 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국유지 토지교환취득의 건 및 시유 토지·건물 교환처분의 건을 삭제함.

#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의결주문 중 “건물(15,874.00 $m^2$ )신축”을 “건물(15,874.00 $m^2$ )을 신축”로 하고, “과 세종문화회관, 중랑물재생센터 등 청사 부지와 남산공원 내 시민편익시설 부지로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우리시가 점·사용하고 있어 소유와 점·사용을 일치시키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유지(159,850.69 $m^2$ )를 교환으로 취득하고, 경찰청에서 경찰서 및 치안센터, 국가기관에서 청사 부지, 북한산국립공원, 국립4.19민주묘지로 국가에서 점·사용하고 있어 우리시 활용이 곤란한 사유재산인 토지(3,567,039.31 $m^2$ )와 건물(64,126.03 $m^2$ )을 교환으로 처분”을 삭제한다.

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제1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(목록 : 별첨)
  - 취 득(1건)
    - 건물신축(1건) : 건물 15,874.00 $m^2$

##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「서울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록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·운영 의무화와 전자기록물 장기 보조체계 구축을 위한 현대적인 전문서고시설이 필요하여 은평구 녹번동 산1-61에 서울기록원 건물(15,874.00 $m^2$ )을 신축하려는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.

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(목록 : 별첨)

○ 취 득(1건)

- 건물신축(1건) : 건물 15,874.00 $m^2$



#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약

구 분			내 역			세 부 내 용
			건 수	수 량(m <sup>2</sup> )	금 액(천원)	
취 득	계	토 지				
		건 물	1	15,874.00	42,133,584	
	매입	토 지				
		건 물				
	신축	토 지				
		건 물	1	15,874.00	42,133,584	○ 서울기록원 건물 신축
	교환	토 지				
		건 물				
기부채납	토 지					
처 분	계	토 지				
		건 물				
	매각	토 지				
		건 물				
	교환	토 지				
		건 물				
	멸실	토 지				



